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3265 판결 [압류등기말소]

재판경과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326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01. 11. 14 선고 2001나144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송AA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강BA)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01. 11. 14. 선고 2001나14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히무효라 할 것이므로, 제3자로서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당연히무효인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압류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송C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법및증여세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제39조, 국세징수법 제9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 의한 증여자의 증여세연대납세의무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 등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추상적으로는 성립하지만,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증여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증여자에게 같은 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증여세납부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를 하지 않은 이상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74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권을 행사하여 증여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히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89다카281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연대납부고지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송CA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들의 재산에 대하여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